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9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3.)

상정 · 축조심사 · 수정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윤재옥)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데이터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와 관련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장(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은 프롭테크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는 민·관 협업 기반의 데이터 거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제1차(’21-’2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 12.)과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2021. 11.) 등을 거쳐 그 추진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축적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을 마련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21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24년 구축이 완료되고,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임.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부동산·교통·금융·환경·문화 등의 분야별로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플랫폼별로 지정된 센터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은 한국부동산원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수행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한국교통연구원·직방 등 10개의 센터에서 부동산의 세부 영역별 신규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2024년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동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데이터 260종(데이터 상품 420여 건)과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9종이 제공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추진 연혁 및 사업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은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개방하고 데이터 거래소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부동산 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거점으로, 이와 관련된 안정적인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그런데, 아직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빅데이터의 연계·융합 등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 및 예산 편성 등의 측면에서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도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지정 기관에 위탁할 수 없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의 입법으로 보이며,

현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교통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 함)에서 그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현행 법체계와도 정합성이 있다고 보임.

한편, 안 제13조의2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관리 권한이 발생하고 데이터의 품질 유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이 부과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 및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위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 양질의 민·관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민간산업 확산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한 산업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동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위임 규정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 및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관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 규정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제13조의2(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제13조의2(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이하 “중앙행정기 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 랫폼의 구축 및 운 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 앙행정기관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 면 협조하여야 한 다.</u> <u>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 · 관리의 방법·절 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u>	③ ----- ----- ----- ----- ----- ---<u>대통령령</u>----- -----.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u> <u>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u>

	<u>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